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1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 현행법 제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등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울진 후포, 창원 진해명동 등에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현황]

(2024. 12)

구분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추진현황
1	울진 후포 (경북 울진군)	계류시설 307척 (해상 157척, 육상 150척)	2단계 건축물 등 조성 완료(228)
2	창원 진해명동 (경남 창원시)	계류시설 300척 (해상 150척, 육상 150척)	공사 중
3	안산 방아머리 (경기 안산시)	계류시설 312척 (해상 168척, 육상 144척)	실시계획 협의 중
4	여수 웅천 (전남 여주시)	계류시설 300척 (해상 150척, 육상 150척)	착공예정('25. 上)

※ 출처: 해양수산부

□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업시행자의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하게 되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¹⁾

□ 개정안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할 경우 환경적·외부적 요

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음.

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 주도로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영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법령 정비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을 비롯하여 총 25개임(첨부1 참고).

□ 실무적으로는 현재도 현행법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및 지정취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행정기본법」 제22조²⁾ 및 동법 시행령 제3조³⁾에 따라 제재처분시 위반행위의 동기나 귀책사유 등을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례)

- ▶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 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법규에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선교)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